

대법원 2000. 9. 5 선고 99다60467 판결 [보증채무금]

판 결 요 지

은행이 신◆◆◇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,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할 것이고, 신◆◆◇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◆◆◇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, 신◆◆◇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.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0. 9. 5 선고 99다60467 판결

서울지방법원 1999. 9. 14 선고 99나31291 판결

전 문

당 사 자

원고,상고인 주식회사 한■은행

피고,피상고인 신◆◆◇기금

【원심판결】 서울지방법원 1999. 9. 14. 선고 99나31291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

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, 내용, 목적, 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다32003 판결 등 참조)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부탁계약의 당사자는 성명불상자가 아니라 이□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, 실제로는 성명불상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이□현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부탁계약은 그 계약내용 대로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 그리고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 가운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성명불상자를 위한 신용보증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

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. 논지는 이유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

은행이 신◆◆◇기금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대출을 하는 경우,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하는 주체는 은행이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대출신청을 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그 당사자가 신용보증서상의 피보증인인지 여부는 은행이 이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할 것이고, 신◆◆◇기금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◆◆◇기금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보증인이 될 신용보증신청인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, 신◆◆◇기금이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행위자와 그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다37552 판결 참조).

그러므로 원심이,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논지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유 지 담 주 심 대법관 배 기 원 대법관 박 재 윤